

펌프조 제7대 이사장 선거 공고

우리 조합 정관 제45조(임원의 임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의 제1항에 의거 우리조합의 제7대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공고일 :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9시
2. 선거일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3. 선거장소 : 서울가든호텔 2층 Grand BallRoom
4. 후보자자격 : 조합원의 대표자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및 우리조합 정관 제42조 (임원 자격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선거권자: 조합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우리조합의 조합원
6. 후보자 등록
 - 가. 등록기간 : 10월 21일(월) ~ 10월 25일(금) 낮 12:00 까지
(임원선거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후보 등록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 나. 등록처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파주 조합 사무실)
※ 후보자 등록 순에 따라 기호 부여
 - 다. 등록구비서류 :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조합 홈페이지(www.epump.or.kr) 공지사항에 등록)
 - 2) 이력서(사진 및 등록기준지 필수 기입) 1부.
 - 3)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5) 선거공고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제3자 제공 포함)
 - 6) 조합 운영에 대한 소견서 (공약 등 기재)
 - 7) 조합원사 후보자 추천서 (15개사 이상) 단, 후보자 중복 추천의 경우 무효
 - 8)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단, 개인발급 불가함에 따라 조합에서 지자체로 요청)
 - 라. 선거 등록비 : 1,500만원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 종료 후 조합 발전기금으로 귀속되어 반환되지 않음)
7.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정견발표 (질의응답)를 할 수 있음
8.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으로 문의(T.031-957-5850)

첨부 : 관련규정 및 등록서류 양식 1식.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조합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33조의1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33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⑦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 등도 당연 정지한다. 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제4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연설문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 포함한다) ·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회 · 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 ①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정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경우에 한함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제9조(당선결정) ①이사장의 당선은 총 선거인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감사의 당선은 총 선거인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출석한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선거·투표·개표관리자)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기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 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5. 협동조합법 제51조 1항에 의한 서류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

1. 업체명 :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주소 :
5. 학력 :
6. 경력 :

2024년 11월 27일 실시하는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4년 10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 1) 이력서(사진 및 등록기준지 필수 기입)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선거공고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5) 조합 운영 소견서 1부
6) 후보자 추천서 15개사 이상
7)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조합 별도 확인)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7대 이사장 선거 공고 동의 및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등	1. 후보자 본인 확인 2. 자격 검정, 3.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4. 선거관련 안내문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1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사장 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 범죄사실 존재 3. 임원결격사유	조합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회보	지방자치단체 회신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제7대 이사장 선공 공고문에 대한 동의

※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제7대 이사장 선거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및 동의, 확인하고 서약 합니다. (예 / 아니오)

2024년 10월 일

조합원사명

성명

(인)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추천서

- 추천자 성명 (한글) :
- 소속 :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 업체명 :
- 직위 :
- 생년월일 :

상기인을 2024년 11월 27일 실시하는 제7대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추천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한하여 유효하며, 중복 추천에 대하여는 무효처리 됩니다.
- 주) 조합으로 직접 제출 금지하며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간 중 사본 접수 가능하나 추후 원본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